

의안번호	제 27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최정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4월 11일

#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최정훈, 노금식, 김성대,  
오영탁, 이옥규, 이태훈,  
임영은

## 1. 개정이유

-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, 도에서 실시하는 시·군 감사시기인 3년 주기와 동일하게 맞추고자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함(안 제5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감사관과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임기 등)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제5조(임기 등)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도민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시·군 감사 기간 3년과는 일치하지 않음.  
따라서 도민감사관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.